

3. 2010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- **민간이전경비 지원 대상단체 예산편성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**
 - 종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대상단체에만 적용하던 예산편성기준을 민간경상보조·행사보조와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 적용

- **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명칭변경 및 인상**
 - 명칭변경 :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⇒ 의정운영공통경비
 - 기준액 인상 : '09기준액 +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%내 ⇒ 우리도는 1인당 6.2%/378천원 인상(現기준액 6,100천원 ⇒ 6,478천원)

- **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병금지급 폐지 및 지급대상 자율결정**
 -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간 병급 지급규정 폐지
전체지급대상중 자치단체 선택대상인 9종(감사,세무,예산,복식부기,관재,법무,여론동향,공무원단체,회계계약) 범위내 지급대상과 월액규모 자율결정

- **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**
 - 행정보조/단순노무원의 일급단가 및 시간외수당 5.4% 인상
※ 일급단가 1,800원(33,200 → 35,000원), 시간외수당 338원 인상

- **세입·세출과목 변경**
 - 지방세 : 보통세 통계목 확대(11개목 ⇒ 12개목)
* 지방소비세 신설, 농업소득세 폐지
목적세 통계목 축소(5개목 ⇒ 4개목) *사업소세 폐지
 - 지방교부세 통계목 세분화 : 1개목 ⇒ 4개목
※ 지방교부세 →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분권교부세, 부동산교부세
 - 인건비 통계목 축소 : 10개목 → 4통계목 (보수,기타직,무기계약직,기간제근로자)
※ 기본급,수당,정액급식비,교통보조비,명절휴가비,가계지원비,연가보상비 통합